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19-131호

도로명주소 부여 고시

우리 구 신축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「도로명주소법」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.09.11.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: 서대문구 성산로 329-11 외 1건

연번	종전 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	비고
1		붙임조서 참조			

※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지적과(☎02-330-1238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「도로명주소법」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.

-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도로명주소 변경 등

-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-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참고사항

-공동주택의 경우 종전 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조서

연번	종전 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	비고
1	연희동 421-7, 421-17	성산로 329-11	2010.04.22	행정구역 명칭 사용	
2	홍은동 421-28	명지대길 38	2010.06.10	명지대학교 인근 도로	